

# 공증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

이 상 석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  
공증인 · 변호사

## I. 서 론

현 정부는 국민소통과 성장동력 점화 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강조해 오고 있다.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져 일선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끔,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선 요구에 대하여 즉시적으로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규제 개선의 시각에서 공증실무의 현장을 살펴보자면, 공증실무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하여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과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있다. 예컨대, 도장이 없어 번역문 인증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일이라든지, 직인으로 일일이 증서 간인을 찍는 동안의 지루한 기다림이라든지, 하루 종일 수백 번의 간인을 찍고 났을 때의 어깨통증 같은 것은 대국민 접촉점에 서있는 최일선의 실무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증 실무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규제개선 사항들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만,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은

제외하고, 당장 불편함이 크면서도 비교적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들에 관하여서만 실무적 관점으로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① 번역문 인증 시 ‘서명날인’ 중 ‘날인’의 폐지, ② 증서 간인 시 ‘직인에 의한 간인’을 ‘천공식 간인’으로의 대체, ③ 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의 ‘간인’ 폐지, ④ 대면공증 촉탁인 확인을 위한 ‘지문감식기’의 도입, ⑤ 집행문 부여 시 원본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개선.

## Ⅱ. 공증 규제 개선 사항들

### 1. 번역문 인증 시 ‘날인’의 폐지

#### 가. ‘번역문 인증’의 의의<sup>1)</sup>

공증인법상 ‘인증’은 사서증서(사문서) 등에 관해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 등을 공증인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사서증서 인증 중에서도 특히 ‘번역공증’이라고 불리는 ‘번역문의 인증’은, 그것이 어떤 원문에 대한 번역문이라는 것의 인증으로서,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한 것이라는 점의 증명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문 인증은, 번역문의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① 영문 번역문의 인증, ② 영어 이외의 외국문 번역문의 인증, ③ 국문 번역문의 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등 어디에도 번역문 인증에 관한 근거 조문이 전혀 없고, 오로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가 유일한데, 그나마 영문 번역문의 인증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서식도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병기한 서식’이나 외국어 원문을 국어로 번역한 ‘국문 번역문 인증’의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공증실무상으로는 영문 번역문 인증 이외의 중국어 등 ‘외국문 번역문의

1) 남상우, “번역문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제2절 1. 참조.

인증'의 경우에도 영문 번역문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45호 인증문 서식과 제41호 표지 서식을 사용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 '국문 번역문 인증'의 경우에는 제45호 서식 중 영문서식 부분을 제외하고 국문서식 부분만 사용하여 인증하고 표지도 제33호 서식을 사용한다.

#### 나. '서명날인'의 의미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서명' 또는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은, 일반적으로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인데, 공증에서의 참석자의 서명날인은 그 참석자가 증서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이의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정(승인)하는 의미가 있다.<sup>2)</sup>

'서명'이라 함은 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자서)을 말한다. 즉, 자기의 성과 이름을 비교적 또박또박 적는 것이 서명이므로, 성명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림체로 쓰는 서양식 사인(signature)은 여기에서 말하는 서명이 아니다.<sup>3)</sup>

'기명'은, 성명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므로, 꼭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자필 자서가 아니더라도, 타자로 치거나 워드 인쇄, 고무인 날인, 명판을 찍거나 타인이 대필하는 것도 모두 '기명'이다.<sup>4)</sup>

'날인'이라 함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 즉 도장을 눌러찍는 것을 말한다. 인장은 성명이 모두 있거나, 성 또는 명만 있어도 되지만, 성명과 전혀 다른 도장은 사용토록 하면 안 된다.<sup>5)</sup>

'기명날인'은 기명 and 날인(둘 다 있어야 함)이라는 뜻이고, '기명·날인'은 기명 or 날인(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됨)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서명날인'은 서명 and 날인(둘 다 있어야 함)이라는 뜻이고, '서명·날인'은 서명 or 날인(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됨)이라는 뜻이다.

2) 대한공증인협회, 개정판 공증실무(2013. 5.), 64면 (4) 참조.

3) 대한공증인협회, 개정판 공증실무(2013. 5.), 244면 나. 참조.

4) 대한공증인협회, 개정판 공증실무(2013. 5.), 244면 나. 참조.

5) 대한공증인협회, 개정판 공증실무(2013. 5.), 244면 나. 참조.

한편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도 포함)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실무상 현황 및 문제점

##### (1) 실무상 현황

본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사서증서를 작성하여 촉탁하는 경우, 통상의 사서증서의 인증에서는 본인이 ‘날인’ 할 수 없어도 ‘서명’의 방법에 의해서 촉탁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그러나 번역문의 인증의 경우에는, 촉탁할 때 제45호 서식의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날인할 수 없는 사람은 촉탁인이 될 수 없다(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즉, 공증인 앞에서 촉탁인이, 제출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않다고 서약하면, 공증인은 아래 예시와 같이 제45호 서식 상단의 서약서란에 촉탁인으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기재함과 동시에 촉탁인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도록(‘서명날인’) 시킨다.

(외국어 번역문 인증인 경우의 서약서)

|                         |                                                               |
|-------------------------|---------------------------------------------------------------|
|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 |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
| 2015. . . .             | 2015. . . .                                                   |
| 서약인 (인)                 | Signature                                                     |

(한국어 번역문 인증인 경우의 서약서)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

2015. . . .

서약인 (인)

## (2) 문제점

위와 같이 위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서 번역문의 인증을 촉탁할 때에는 제45호 서식의 서약서에 반드시 촉탁인이 ‘서명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번역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원문과 번역문, 번역능력 입증자료, 신분증 등 다른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공증인사무소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도장’을 소지하지 않아 서약서에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문 인증의 촉탁인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실무상 공증사무소의 창구에서는 도장이 없어 번역문 인증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공증인 보조자에게 불멘소리로 항의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은행조차 서명 하나로 큰돈을 인출해 주는 마당에, 번역공증 하는데 본인 서명 외에 도장까지 찍으라 하니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은 규제철폐 하라고 그토록 외치건만, 법무부에서는 이런 것 하나를 안 고치고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은 서명만으로도 번역공증을 해 주면서, 왜 한국인들에게만 도장을 파오라고 하느냐?” 등등의 불만을 쏟아내곤 한다.

결국,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사소송법 제358조나, 본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사서증서를 작성하여 촉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으로 촉탁할 수 있다는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번역문의 인증도 서약서 상의 ‘서명’만으로 행위자로서의 동일성 표시 및 증서 확인 후 이의없음을 승인했다는 면전인증 효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문 인증 시 ‘날인’ 제도는 불필요한 민원과 불신을 야기하는 과잉규제 요인으로서 조속히 철폐되어야 할 제도임을 공증실무 현장에서는 누구라도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항이다.

#### 라. 현행 근거법령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개선책

현행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개정 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법무부에서 자체 개정하면 될 것이다.

법무부령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2. 증서 간인 시 ‘천공식 간인’으로 대체

### 가. ‘간인’ 제도의 의의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40조). 즉,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을 간인하여야 하고,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와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낱낱이 직인을 간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인에 사용하는 직인은 공증인법시행령 제3조(직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직인)에 따라서 가로, 세로 각 2.5cm 크기의 사각형 직인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엄격한 직인 간인(間印)제도는, 공정증서 및 인증서가 작성된 후에 증서의 전부를 바꿔치기 하거나 그 일부를 바꿔 끼울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서의 진위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 나. 실무상 현황 및 문제점

### (1) 실무상 현황

현재의 사각도장형 직인 간인제도는,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을 간인하여야 하고,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뿐만 아니라 부속 서류와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낱낱이 직인을 간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 실무자가 하루 종일 간인에 들이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가 하면, 간인방법 자체가 한 손으로는 서류를 넘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직인을 쥐고 서류를 반으로 접은 다음 인주를 묻혀 접힌 앞뒤 서류 사이에 직인을 눌러 찍는 원시적이고도 수공업적인 방식이고, 그나마 하나의 공증사무소에 하나의 직인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직인만은 돌려가며 교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공증사무의 신속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간인을 반복하는 동안 여러 촉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간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중간 부분을 쉽사리 바꿔 끼우고 기존의 간인 부분에 맞춰 정교하게 다시 직인을 찍을 수 있는 등 변개도 용이한 것이 현실이다.

### (2) 문제점

그 결과, 하나뿐인 사각 직인으로 일일이 증서 간인을 해야 하는 동안의 업무진도의

저생산성, 촉탁인들의 지루한 기다림과 업무지연으로 인한 조바심과 짜증, 보조자들이 하루 종일 수백 번의 간인을 찍고 났을 때의 어깨통증 등 피로가중, 간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서의 일부를 쉽사리 바꿔 끼울 수 있는 등 공정성을 교란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 다. 현행 근거법령

공증인법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공증인법시행령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별도 1] 공증인의 직인 (3종)

#### 라. 개선책

현재 각급 법원 및 금융기관, 대한공증인협회 등에서는 전동식 천공간인기를 이용하여 간인을 하기 때문에 간인이 신속, 정확,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간인된 서류 일부의 바뀌치기도 안 되고 있다.

더군다나 공증인법시행령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제2항에 따라,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12. 30. 개정에 의하여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직인간인에 관하여는 이미 천공방식의 간인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증실무상의 장간 간인제도도 개선하여,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직인) [별도 1]에 ‘사각도장형 직인’ 뿐만 아니라 ‘천공간인형 직인’의 조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속히 전동식 천공간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3. 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의 ‘간인’ 폐지

#### 가. ‘인증부 간인’ 제도의 의의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공증인법 제58조 후단).

촉탁인에게 교부할 ‘인증서’ 원본을 공증실에 보존하는 ‘인증부’ 장부에 갖다 대고 간인을 한 다음 내주어, 나중에 인증서 원본의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면 두 개로 나누어 찍힌 간인 부분을 짝맞춰봐서 그 인증서가 원본임에 틀림없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목적에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증서와 인증부(認證簿) 사이의 간인 제도는 애초에 일본 공증인법을 그대로 차용해 왔던 것으로<sup>6)</sup> 당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이다.

#### 나. 실무상 현황 및 문제점

##### (1) 실무상 현황

현재 전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수많은 사서증서들에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매번 완성된 인증서 원본을 인증부에 갖다 대고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실무절차 상 먼저 공증보조자들이 인증서 초안(원본 및 사본)을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결재를 올리면, 공증인이 촉탁인 확인과 동시에 내용을 검토하여 서명날인을 한 다음 인증서 원본 및 사본을 공증보조자에게 되돌려주면, 공증보조자가 그 완성된 인증서 원본을 인증부에 갖다 대고 직인으로 간인을 찍은 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인증서 사본은 공증실 서고에 보관한다.

6) 日本 公証人法 第五十九条 (전단 생략) 公証人其ノ証書ト認證簿トニ契印ヲ為スコトヲ要ス (후단 생략)  
Japanese Notary Act Article 59 (전단 생략) and the notary shall affix his/her seal to the deed and the certificate registry so that it overlaps them both. (후단 생략)

한국 공증인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전단 생략)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Korean Notary Act Article 58 (Entry in Deed) (전단 생략) and a joint seal shall be affixed between the deed and the notarial deed book.

## (2) 문제점

‘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의 간인’ 제도는, 인증서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비하여, 수많은 사서증서들에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매번 인증서를 인증부에 갖다 대고 직인을 찍어야 하는 간인방법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간인 부분을 맞춰보는 간인대조 방식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동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인증서 원본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장부간인’ 방식을 없애고 아예 ‘인증서 사본’을 보존케 하여야 한다는 학계와 실무계의 일치된 견해가 받아들여져, 2009. 2. 6. 공증인법 제57조 제4항을 ‘공증인은 (중략)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전문을 개정하였던 것인데, 애석하게도 그 입법과정에서 제58조 후단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는 부분의 삭제를 놓치고 만 문제점이 있다.

즉, 인증서 원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인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서류’까지 보존하는 마당에, 또다시 인증서 원본의 진위 확인 목적으로 여전히 ‘인증부 간인’을 요구하는 것은 번문욕례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의 간인’ 제도는, 효과는 적고 공증실무 상품이 너무 많이 드는 과잉규제로서 진작 철폐됐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인 것이다.

## 다. 현행 근거법령

공증인법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라. 개선책

공증인법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를,

공증인법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4. 대면공증 촉탁인 확인을 위한 ‘지문감식기’의 도입

### 가. ‘대면공증’의 의의

공증인은,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는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이 공증을 의뢰하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유효기간 내의 원본)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30조).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단서).

물론 ‘대면’인지 ‘비대면’인지의 여부는, 신분증에 의한 신원확인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더하여,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서 확인 결과 이의없음을 확정적으로 승인하는 의미에서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하며(공증인법 제38조 제1, 3항),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면전인증 또는 자인인증의 방법으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까지 하여야(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비로소 대면공증인 것이다.

그리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가장 흔한 사서증서의 ‘자인인증’ 경우의 대면공증에 의한 촉탁인 확인의 실무 절차를 예시하자면, 먼저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공증촉탁서’에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각 인적사항들을 기재토록 한 다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되면, 출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면서 신분증 상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그가 촉탁인 본인 또는 촉탁대리인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신분증 사본을 공증촉탁서에 첨부함과 아울러, 이어서 인증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에게 결재를 올리면, 공증인이 ① 출석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물음과 동시에, 신분증 상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그가 촉탁인 본인 또는 촉탁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케 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② 출석인에게 “이 사문서가 본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가 맞느냐?”고 물어, 그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그 사서증서의 날인이 맞다고 확인하게 하여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며, ③ 작성된 인증서를 보여주며 “이상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여 그가 “이상없다”고 확인하면, 인증서 원본 1통을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에게 교부한다.

물론 위와 같은 여러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에 의한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확인이야말로 대면공증의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 나. 실무상 현황 및 문제점

### (1) 실무상 현황

위에서 이미 예시한 바와 같이, 대면공증에 의한 촉탁인 확인의 실무 절차는, 먼저 공증보조자가 출석인에게 ‘공증촉탁서’에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각 인적사항들을 기재토록 한 다음, 출석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면서 신분증 상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그가 촉탁인 본인 또는 촉탁대리인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신분증을 복사해 공증촉탁서에 첨부함과 아울러 증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에게 결재를 올리면, 공증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 다시 출석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물음과 동시에 신분증 상의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그가 촉탁인 본인 또는 촉탁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교차 증명케 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의 공증업무 관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절차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방법

－ ARS를 통한 확인

- ① 국번 없이 전국 공통 “1382”를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
- ② “일치합니다”,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증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등의 확인멘트가 나옴

－ 인터넷을 통한 확인

- ①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http://www.egov.go.kr))에 접속
- ② 민원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선택
- ③ 주민등록증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 후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방법

-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http://www.dla.go.kr))에 접속
- ② 온라인민원,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선택
-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입력 후 확인

(2) 문제점

신분증에 의한 본인확인 제도는 대면공증의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육안 대조하는 것은 신분증의 위변조, 유효기간 경과, 사진의 퇴색 변질, 성형 대중화 등의 실태에 비추어 너무나 원시적이고 미개한 방법이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갱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전 발급 당시의 어릴 적 사진 그대로이거나 사진 자체가 변색되어 판독불가인 경우가 아주 많고, 신분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는 간단히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인을 속이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ARS나 인터넷에 의한 진위확인 방법도 그 절차가 번거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속전속결을 중요시하는 공증실무의 속성상 그리 적절치 않은 방법이며, 특히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 왔을 경우 신분증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소지인 자신의 신분증인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의하여 육안 대조하여야 하는 일은 공증사무의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에 장애가 되고, 민사 사고 및 분쟁가능성의 상존으로 인하여 공증인들의 지속적인 불안 및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 다. 현행 근거법령

공증인법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공증인법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제5항을 준용한다.

## 라. 개선책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공증사무소에도 주민센터에 있는 것과 동일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여 국가전산망(주무부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시스템 정부지원관리 담당자)과 연계해서 지문 하나만으로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방법이 당장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현재 은행, 증권사 등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변조를 간단하게 감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5. 집행문 부여 시 원본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개선

### 가. ‘집행문 부여’의 의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권원’이라 함은 확정판결, 집행증서(집행수락문언부 공정증서) 등 집행력을 인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한 공정의 문서(구 채무명의)를 말한다.<sup>7)</sup>

‘집행문’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sup>8)</sup> “이 정본은,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라고 적고,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공증인 등 집행문부여기관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집행문 부여’라 한다.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2003. 3.), 154면 2. 가. 참조.

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2003. 3.), 184면 3. 가. 참조.

## 나. 실무상 현황 및 문제점

### (1) 실무상 현황

공증실무상 집행문부여는 제16호 서식의 집행문부여신청서와 함께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받아 심사 후 제17호 서식의 집행문을 작성, 그것을 정본 뒤에 첨부하여 직인 간인한 다음, 공증사무소에 보관중인 공정증서 원본 말미 하단에 집행문부여사실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에는 판결원본 등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는 공정증서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공증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즉, 본래 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증서보존 공증인이 내어 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제29조의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문에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면 되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원본 부기에 있어서만은, 법률인 민사집행법 제36조가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을,<sup>10)</sup> 하위 법무부령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서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9) 대한공증인협회, 개정판 공증실무(2013. 5.), 98면 20행, 174면 (4) 각 참조.

10) 법원실무상으로는 그 외에 부여 법원명 기재 후,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인인(記名認印)함.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2003. 3.), 214면 (5) 참조.

## (2) 문제점

그 결과, 현행 법규상 집행문부여 신청 시에는 공증인이 신청인을 대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집행문 부여 시에만은 공정증서원본의 집행문부여사실 부기에 공증인이 언제나 직접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바쁜 일과시간에 다른 공증업무가 산적해 있어 순서상 서명날인이 밀리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가 즉시 되지 않아 분초를 다투는 채권자들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공증인으로서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집행문부여 신청인을 예상하여 전전공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도 법원의 집행문부여 시 ‘기명인인(記名認印)’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공증인의 집행문부여 시에도 공증사무소 보관본(원본)에 ‘서명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한다하여 실무상 문제될 것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sup>11)</sup>

11) 집행문부여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수단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있고, 채무자가 공정증서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9조).

## 다. 현행 근거법령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준다.

민사집행법 제29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3., 5. 생략)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집행문) ②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라. 개선책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문 부여 시 법원의 부기방식과 유사하도록,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시에도 ‘기명날인’ 만으로 가능할 수 있게,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집행문)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를,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집행문)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sup>12)</sup>로,

법무부에서 바뀌 준다면 공증 일선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규제 개선의 시각에서 공증실무상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하여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과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 중 ① 번역문 인증 시 ‘서명날인’ 중 ‘날인’의 폐지, ② 증서 간인 시 ‘직인에 의한 간인’을 ‘천공식 간인’으로의 대체, ③ 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의 ‘간인’ 폐지, ④ 대면공증 촉탁인 확인을 위한 ‘지문감식기’의 도입, ⑤ 집행문 부여 시 원본에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개선하는 것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바라기는, 본고를 계기로 법무부가 현장의 소리를 더 광범하게 수렴하여 위 논의들이 공증규제개혁 사안임에 틀림없음이 확인된다면 신속하고도 기동성 있게 비정상적 정상이 되도록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이룸으로써, 현업의 최일선에서 대국민 접촉점에 서 있는 공증실무자들의 말 못할 고충을 해결하여 좁은 물론, 일상의 사회 경제 활동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공증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조경제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12) ‘서명날인’은 서명(자필로 성명 기재) + 날인하는 것이고, ‘기명날인’은 기명(명판 등으로 성명 기재) + 날인하는 것이다.

비록 줄고일지언정 다시없는 보람일 것이다. 